

□인권위 교육자료 88-1

인권수호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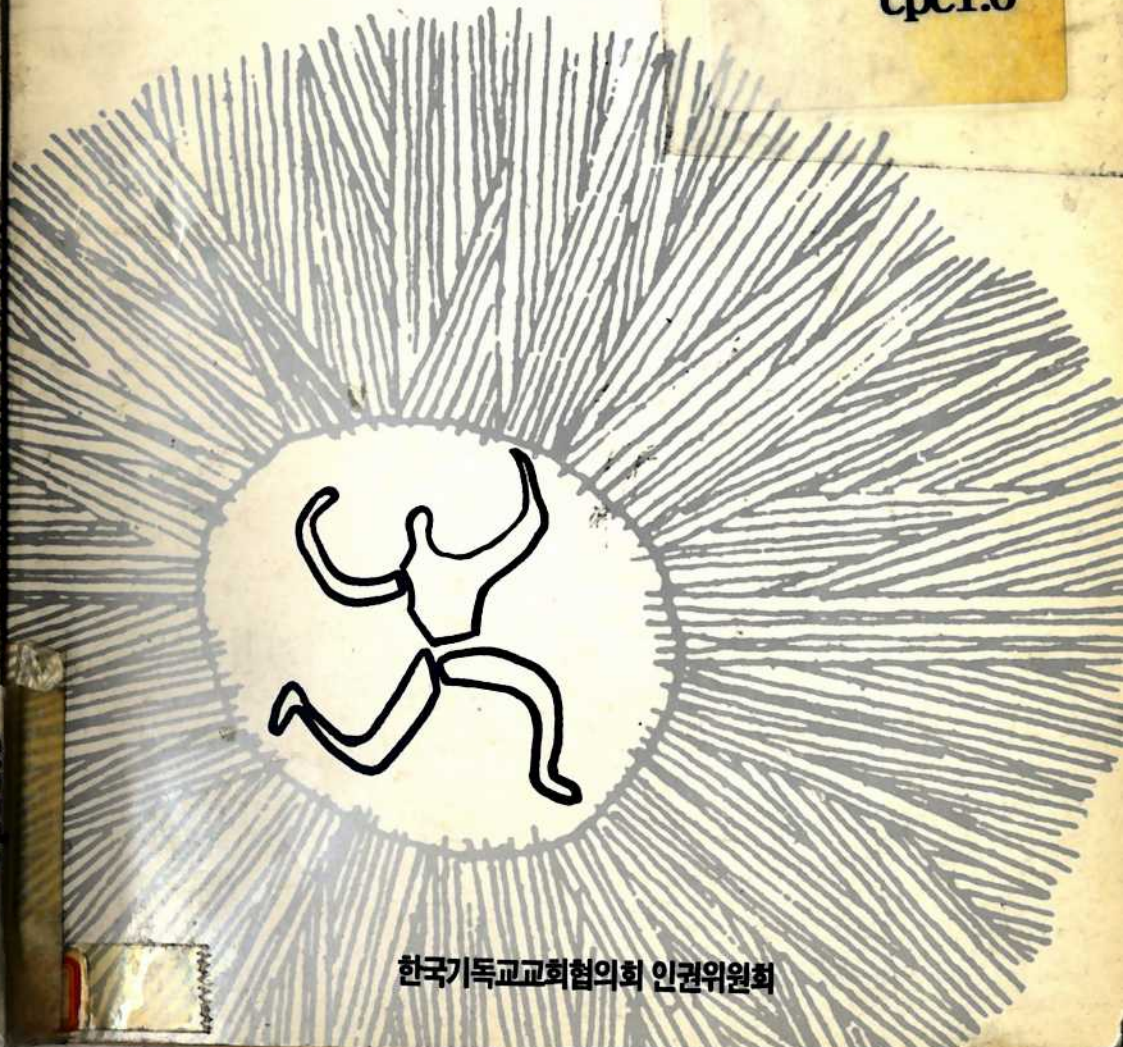
정치적 반대자의 신체적 자유를 중심으로

cpc1.6



인권수호지침 • 정치적 반대자의 신체적 자유를 중심으로

인권수호지침
cpc1.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 주소/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307호
- 전화/764-0203

제작/밀알기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인권위 교육자료 88-1

인권수호지침

-정치적 반대자의 신체적 자유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 권 위 원 회

머 리 말

인권은 오늘날 인류공통의 이상이며, 인권의 보장은 민주국가의 기본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박정권 이래 계속되어 온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우리의 인권상황은 날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급기야 작년에는 성고문사건에 이어 고문살인사건까지 드러나기에 이르러, 그에 대한 온 국민의 분노가 6월 민주화대투쟁으로 결집되어 제5공화국을 종식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합법을 가장한 이른바 제6공화국의 본질 역시, 제5공화국의 주도세력들이 부정선거를 통하여 재등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인권 상황이 본질적으로 개선되리라고 전망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의 인권은 우리 스스로 지키고 쟁취하려는 노력없이 결코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위원회는 그 동안의 경험을 살려, 인권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를 중심으로, 이를 수호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들을 정리하여 '인권수호지침'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침서는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기획하고 있는 기사연 교육 자료를 참조하였으며 본위원회의 홍성우 변호사께서 감수하여 주심으로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작은 자료집이 인권침해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988. 5. 3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 권 위 원 회
위원장 박 종 기

인권수호지침

차례

●머리말

제 1부 법과 인권

1. 인권을 수호하는 길	7
2. 국민의 기본권	8
3. 인신구속 및 재판절차 개관	8
(1) 경찰에서의 구속기간	8
(2) 검찰에서의 구속기간	9
(3) 법원의 구속기간	9
4. 인권침해에 대한 규제	11

제 2부 인권침해 사례와 그 대응

1. 체포단계에서의 인권	12
(1) 불심검문	12
(2) 불법연행	13
(3) 체포과정에서의 폭행	16
(4) 연금, 격리호송, 강제여행 등	16

(5) 압수·수색	17
(6) 즉결 심판과 유치장 수감생활	18
2. 피의자의 인권	20
(1) 피의자의 기본권리	20
(2) 수사단계별 유의사항	22
(3) 인권침해 유형과 대응책	23
3. 피고인의 인권	27
(1) 피고인의 지위와 권리	27
(2) 재판 진행 단계	28
(3) 피고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유형	29
(4) 공판진행 중의 가족들의 대책활동	30
4. 재소자의 인권	31
(1) 재소자 인권의 기본성격	31
(2) 현행 행형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응책	31
5. 보안처분과 인권	36
(1) 보안처분의 종류	36
(2) 보안처분 대상자와 문제점	37

(3) 보안처분의 결정	38
(4) 보안처분의 면제 결정	39

제 3 부 부 록

1. 국제인권규약	43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43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55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	75
2. 주요 서식례	79
• 압수, 수색 영장	79
• 구속 영장	80
• 구속 영장 등본 교부 신청서	81
• 구속적부심사 청구서	81
• 공소장	83
• 기피신청서	84
• 증거보전 청구서	85
•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	86
• 공판조서	86
• 공판조서 열람 청구서	88

• 구속 취소 청구서	89
• 보석허가 청구서	90
• 유죄판결	91
• 피고인의 항소장	92
• 항소이유서	93
• 고소장	95
• 고발장	96
• 고소 (고발) 사건 처분 통지서	96
• 불기소이유의 고지 청구서	97
•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장	98
• 항고기가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	99
• 재정신청서	100
•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	101
• 복권 신청서	102
• 형사보상 청구서	103
3. 인권관계단체 · 교도소 · 인권변호사 주소록	105

법과 인권

1. 인권을 수호하는 길

오늘날 인류공동의 이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권사상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 싸워 온 사람들의 역사적 투쟁의 산물이다. 이러한 인권사상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원칙적으로나마 받아들여져 헌법등에 반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법은 언제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즉, 법은 국민 대다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을 일정정도 반영하고 있는 반면, 지배 권력의 통치 수단으로서의 측면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나라의 법이 그러한 법의 양면성 중 어느 측면을 우세하게 반영하고 있는가는 곧 그 나라가 얼마나 민주적인 국가인가를 나타내 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 인권 관계법들은 아직도 인권 탄압적인 독소 조항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인권 수호를 위한 첫번째 노력은 인권의 탄압을 합법화시켜 주고 있는 각종 악법들에 대한 개정 혹은 철폐운동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전인류의 이름으로 천명된 각종 인권 선언들에 나타난 인권 사상들을 보다 폭넓게 확산하고 이러한 인권 사상들이 우리의 법 체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결연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현행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권리들조차도 실제 운용과정에서는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악법의 개정과 철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필요한 일은, 실제 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할 때, 현행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나마 최대한 확보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게 될 때 대개의 경우에는, 당황하기도 하고 또 현행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방법등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이

유료, 일방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만 할 것이다.

결국 인간의 존엄과 권리는 이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부단한 투쟁을 통해서만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국민의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대한 이상들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수많은 문서들을 통하여 천명되어 왔다. 이러한 문서들은 우리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들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간접적으로는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가 우리 인권을 보장하고 수호하기 위한 일차적인 근거임에 틀림없다.

이에 여기에서는 개정 헌법 제2장의 국민의 권리와 관계된 조문들을 실었다.

3. 인신구속 및 재판절차 개관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합법적으로 체포할 수 있는 경우는 사전 영장에 의한 경우(형소 201조), 현행범의 경우*, 긴급구속의 경우* 등 세 가지 경우가 있다. 또한 체포(구금)를 할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만 한다.(형소 72조 제209조)

(1) 경찰에서의 구속기간

사전 영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행범 체포나 긴급구속에 의한 체

포인 경우, 피의자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지방법원판사가 있는 시·군에서는 구속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기타의 시 또는 군에서는 72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형소 207조, 형소 212조의 2)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경찰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은 10일이다.(형소 202조)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와 동법 제10조(불고지)의 위반죄의 경우에는 위 구속기간이 1차 연장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은 어떠한 경우라도 피의자를 20일 이상 구속하고 있을 수 없으며, 위 기간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송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석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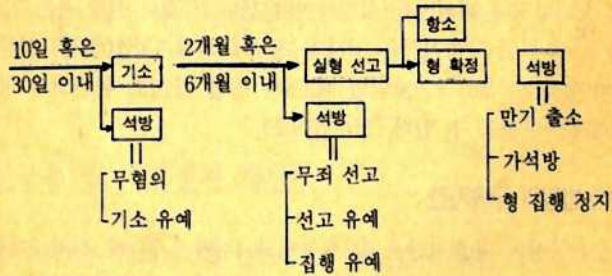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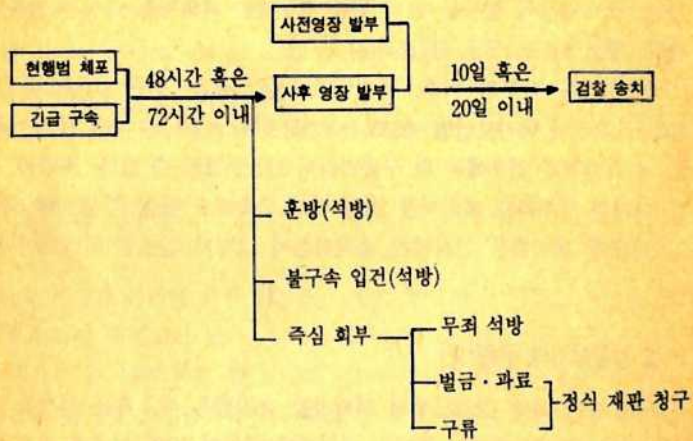
(2) 검찰에서의 구속기간

위와 같이 하여 경찰로부터 피의자를 송치받은 때, 혹은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기소)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무혐의 석방 혹은 기소유예 석방) 그러나 위 구속기간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1차(10일간) 연장될 수 있으며(형소 203조) 국가보안법 제3조와 동법 제10조 위반죄의 경우는 2차(20일간) 연장될 수 있다.(국보법19조)

(3) 법원의 구속기간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2개월간이고 1심에서 2차에 걸쳐 2개월씩 갱신할 수 있으므로 구속사건에 있어서 1심 재판은 구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판결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내에 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일단 피고인을 석방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 2·3심의 경우에도 구속영장은 2회씩 갱신할 수 있으므로 각기 4개월 전후의 기간내에 판결선고를 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무죄,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선고 등이 있다.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이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 인권침해에 대한 규제

인권수호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권리 그 자체를 주장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을 때 이에 항의하여 인권을 침해한 자 및 그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문책을 요구하

는 노력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인권침해에 대한 규제 법령을 알아두는 것은 인권침해를 당할 때의 항의 및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에 대단히 유익하다. 대표적인 인권침해 규제 조항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직무유기(형법 122조)
-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형법 123조)
- 불법체포, 불법감금(형법 124조)
- 폭행, 가혹행위(형법 125조)
- 피의사실 공표(형법 126조)
- 주거침입, 퇴거불응죄(형법 319조)
- 체포, 감금 등의 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 비밀침해(형법 제316조)
- 주거수색(형법 제321조)

●2부●

인권 침해 사례와 그 대응

1. 체포단계에서의 인권

(1) 불심검문

최근에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지난 수년간 일반시민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당했던 인권유린은 무차별한 불심검문이었다.

***관계법:** 불심검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1항, 2항, 4항)와 주민등록법 제17조의 10을 근거로 하여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법규에 따라 경찰관은 거동이 수상한 사람등을 정지시켜 질문하고,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며, 사복경찰관인 경우는 자신의 신분을 먼저 밝힌 후에 경찰관서로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인권침해유형:**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이, 불량한 태도와 언사를 사용한든지 답변을 강요한다든지, 경찰관서로의 동행을 강요한다든지, 가방등을 강제로 열어본다든지, 경찰관의 질문이나 소지품 검사, 동행요구 등에 대해 불응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등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3항, 8조)

***대응책:**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첫째, 그 부당성을 지적하여 엄중 항의하면서 주변시민들의 호응을 얻어 문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둘째, 그래도 부당한 인권침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성명, 직책 및 직권남용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두며 셋째, 위 사항들에 대해 증거가 확보된 경우(증인, 상해진단서)에는 필요에 따라 고소, 고발 재정신청(형사상의 대응책), 손해배상청구(민사상의 대응책) 등을 할 수도 있다.

네째, 위와 같은 법적 대응과는 별도로 경찰관의 폭행등 직권남용에 대하여, 해당경찰서에 찾아가 공식 사과와 치료비등의 보상을 요구하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의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기타:** 경찰관 직무 집행법 2조의 규정은 경찰관의 합법적인 직무행위로서의 불심검문의 대상을 매우 광범위하고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상황에서는 경찰관 직권남용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2조의 규정은 경찰관의 합법적인 불심검문의 대상과 내용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2) 불법연행

불법연행(체포) 역시 가장 빈번히 행해지는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의 하나이다.

***관계법:** 합법적인 연행(체포, 구금 등)에 대한 규정은 본서 제2장과 제3장에 설명된 바와 같다. 불법체포 및 감금에 대해서는 형법 제124조에 규정되어 있다.

***인권침해유형:** 위의 규정들을 위반한 연행(체포), 구금은 불법연행이다. 불법연행은 ①처음부터 신분을 알 수 없는 자들에 의해서, 알 수 없는 장소로 끌려가는 경우와 ②임의동행이라는 형식을 띤 사실상의 강제연행,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응책:** ①의 경우,

피의자는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된 채, 격리된 상태에서 극심한 고문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명목상의 임의동행이라는 형식으로 강제연행한 후 보호조치란 미명 하에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대공분실, 시경·도경대공분실, 호텔방에 불법감금해 놓고 법정구속기간(본 자료집 3장 참조)에 구애됨이 없이 장기간(때로는 수개월간)에 걸쳐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고문수사를 하게 되며, 구속영장 발부등의 절차는 사후에 형식적으로 밟는 것이 상례이다. 이런 경우는 가장 전형적인 불

법체포, 불법감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불법체포 및 감금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4조의 2, 형법 124조)등을 이유로 한 고소 고발은 물론 검찰의 불기소처분 시에는 재정신청 또는 검찰항고등의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아울러 손해배상청구등의 민사상의 법적 투쟁도 병행할 수 있다. 또한 유인물, 향의집회, 마스크등을 이용하여 사실폭로 및 여론을 환기시키는 등의 방법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의자 본인은 연행되면서 첫째,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체포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아울러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임을 분명히 말하고 저항할 수 있는 데까지 저항하며, 연행자의 신분, 연행장소, 연행일시, 강제구금장소 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신이 강제연행되었다는 흔적을 남기도록 한다. 둘째, 연행된 후에는 자신이 연행된 사실과 피구금장소등을 가족들에게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하며, 또한 실제로 통지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변호사 혹은 가족과의 접견을 전제로 진술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을 쓸 수 있다. 또한 미리 석방되는 동료등을 통해 자신의 구금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접견이 이루어졌을 때는 불법연행 이후의 고문수사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법적으로 피고인-피의자를 구속할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나 그 밖에 피의자-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구속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피의자(피고인), 사건명, 구속일시, 장소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87조, 제209조, 형사소송법규칙 제51조)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셋째, 연행 이후 가능한 한 위축되지 말고 고문등을 이겨내도록 노력하며, 고문을 당했을 때는 고문당사자의 신분과 인상 및 고문내용등을 기억하고 고문의 증거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가족들은 피의자의 소재 확인을 위하여 첫째, 피의자의 실종(불

법연행) 사실을 발견한 즉시, NCC 인권위원회,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등에 소재확인 협조를 요청한다. 또한 국번없이 전화 182(행방불명자 신고센터)—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지역에서 운용 중—에 소재지 확인여부를 문의하고 관할 경찰서 정보과와 대공과를 비롯하여, 강제연행되었을 만한 곳(시경·도경대공분실, 치안본부대공분실, 안전기획부, 보안사)을 찾아가 연행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또 NCC 인권위원회등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방법으로 실종(강제연행)된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가족들간의 연락을 취하여 상호 정보교환, 피연행자들의 소재 확인을 위해 노력한다. 둘째, 피의자들의 소재 확인을 한 후에는 관계 수사기관에 피의자와의 면회를 요구한다. 가족과의 면회를 허용해 주지 않을 때는 여러 가족들이 한꺼번에 찾아가 집단적으로 면회요구 투쟁을 벌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위원회등과의 협력 하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면회를 요구한다. 셋째, 면회가 이루어지면, 연행 이후의 제반 불법적인 인권탄압의 내용과 그 증거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내의동 갈아입을 옷을 영치시키면서 입고 있는 내의등을 받아 내는 일등이 이에 속한다. 넷째, 이상의 과정을 통해 밝혀진 불법적인 인권유린에 대해 1) 사실폭로 유인물을 제작하여 각계로 전달하고 2) 관계당국에 항의문을 제출하며 3) 향의집회등을 개최한다. 또 필요시에는 관계자에 대한 고소 고발 등의 법적 대응 절차를 밟는다.

②의 경우(임의동행 요구)에는

임의동행이란 용어는 불법적인 용어가 아니며, 말 그대로 임의로 즉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동행이란 뜻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원등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이 이에 응하고 싶지 않으면, 분명한 말과 행동으로 거절해 버리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가 아닌 '강제'로 동행을 요구하면, ①의 경우에 설명된 바와 같이 대응하면 된다.

(3) 체포 과정에서의 폭행

*관계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봉이나 최루탄등의 무기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 사용에 있어서도 사용범위나 사용방법이 정해져 있다. (경집 제10조, 제11조) 형법 제125조에 의하면 재판, 검찰, 경찰 기타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할 때, 형사 피의자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에 의하면 불법체포, 감금 및 폭행 가혹행위에 의해 치상케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치사케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인권침해유형: 시위나 집회현장에서 무차별적인 경찰의 집단 폭행에 의해 중증상을 입는 경우, 또는 체포된 이후 경찰관서등으로 호송되어 가는 도중의 보복적인 폭행등, 또 시위진압 시의 직격탄 발사와 그에 의한 사상등

*대응책: 위와 같은 경우, 일단 폭행 경찰관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노력하며 폭행 경찰관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 고발 및 고소와 함께 진단서등을 첨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이나 국가배상을 청구한다. 폭행 경찰관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한다. 또 최루탄 파편등으로 부상을 입었다면 즉시 진단서를 작성하고 증인등을 확보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연금, 격리호송, 강제여행 등

*관계법: 연금이라는 용어는 법전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연금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불법행위이다. 사회안전법

상의 보안처분과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본서 제9장)

*인권침해유형: 특정 집회등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나 주관자, 연사 및 그의 특정인사들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일정기간 동안 경찰병력등을 동원하여 자택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담당 형사나 기관원 동행 하에 강제 여행을 시키거나, 일정시간 동안 특정 장소에 가지 못하도록 격리시키는 행위등.

*대응책: 이상의 행위등은 형법상 공무원의 불법체포, 감금죄(형법 제124조), 권리행사 방해죄(형법 제 123조) 등에 해당되므로, 경우에 따라 고소, 고발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사회적인 대책이며, 연금의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일단 미리 피신하는 것이 좋으며, 피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금'이 불법적인 인권유린임을 강력히 항의하고, 기회를 보아 탈출을 시도하는 것도 좋다.

(5) 압수·수색

헌법에는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3장)

① 적법 절차에 의한 압수 수색

적법 절차에 의한 압수 수색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영장발부 → 영장제시 → 압수·수색 → 목록증교부 → 조서작성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을 당할 때에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압수·수색 집행인의 신분확인: 소속, 직위, 성명 등
- 압수·수색 영장 제시 요구: 이때 집행인들이 영장제시 요구에 불응하면 압수·수색에 불응할 것.
- 영장 내용 확인: 영장 유효기간, 피의자의 인적사항, 피의사실, 수색의 장소 및 압수의 대상으로 기재된 건물, 야간 집행 가능 여부. 이상의 사항들을 확인한 후, 기재된 압수 대상품 이외의 물품에 대한 압수등, 영장 기재사항 이외의 압수·수색에 대하여는 엄중 항의하면서 이를 거

절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것.

- 압수목록 교부 요구: 압수·수색이 끝난 후에는 압수물품의 목록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불법 압수·수색

불법 압수·수색은 영장 제시 없는 압수 수색과 영장 기재 사항을 위반한 압수 수색이 있다. 이 경우에는 일차적으로는 엄중히 항의하고 실력으로 저지할 수 있는 때까지 저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역부족으로, 위법한 압수 수색을 당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등 해당 법률 위반으로 고소 고발할 수 있다.

(6) 즉결 심판과 유치장 수감생활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한 범죄등 경미한 사건 즉, 5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대하여,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것을 즉결심판이라 한다. 즉결심판은 흔히 유언비어 유포등을 구실로 하여 민주인사들에 대한 일상적인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으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는 중요 인사들에 대한 일시적인 격리 목적으로도 악용되어 왔다. 또한 즉심의 적용범위는 대개 당시의 정치정세에 따라 일관성 없이 자의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① 즉심절차

그 처리되는 절차를 보면, 일단 경찰서등에서 조사가 끝나면 관할 경찰서 보호실에서 밤을 지낸 후 새벽에 즉결심판소로 보내진다. (최근에는 저녁시간에 하도록 대법원 규칙이 개정) 법적으로는 관할 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즉심을 청구하고 필요한 서류 및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한다. (즉결법 제4조) 이때 판사는 피고인에게 변명하고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나(즉결법 제9조 7항), 현실적으로는 경찰관이 작성한 기록만으로 판결을 선고해 버려 '3초재판', '5초재판'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형식적 절차인 경우가 지배적이며,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피고인이 변명하는 경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처벌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부담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못

한다. 구류가 선고되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구치소에서 선고된 일수만큼 지내야 한다. 물론 피고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심판시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동법 제9조 3항)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선고된 구류-벌금-과료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동법 제14조 1항) 그리고 즉심을 선고하는 자리에서 판사에게 구두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고 의사를 표시해도 된다. (동법 제11조 2항)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원칙적으로 유치명령기간 10일 이내에 석방되고 정식재판에 의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선고된 형의 집행이 연기된다. 그리고 사건기록이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되고 검사는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송치해야 한다. (제14조 2항) 그러나 구류선고 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정식재판에서 구류선고를 실효시키더라도 이미 판사가 즉심선고와 동시에 대부분 유치명령(제16조 1항 10일 이내)을 내려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어 버리므로 10일 이내의 구류인 경우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② 유치장 수감 생활

즉결심판에 의하여 구류를 선고받거나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구속되는 경우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다. 유치장에 입감될 때는 유치장 담당 의경등이 신체검사라는 명목으로 흔히 내의까지 벗겨버긴다든지 쓸데 없이 구호제창을 시킨다든지 하는 식으로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부당함을 항의해야 한다. 또한 재감 중에도 규율을 내세워 필요 이상의 가혹한 처우, 예컨대 하루 종일 정좌시킨다든지, 운동시간을 전혀 주지 않는다든지, 폭언과 폭행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함을 항의해야 하며, 과장이나 서장, 검사 등의 순시가 있을 때,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수감 중의 처우가 폭행이나 가혹행위등 불법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자를 고소 고발해야 한다.

2. 피의자의 인권

(1) 피의자의 기본권리

합법적으로 형사입건되어 경찰이나 검사등의 수사기관에서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는 경우 이를 피의자라고 한다. 피의자는 비록 수사기관으로부터 범법의 의심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기소되어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변호인 및 가족등 접견권

헌법상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당한 경우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2조 4항) 또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형소 34조) 또 헌법상, 체포 구금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헌법 제12조 5항)고 규정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 87조와 제209조에 의해 피의자(피고인)를 구속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변호인이나 피의자(피고인) 가족에게 서면으로 구속사실(사건명, 구속일시, 장소)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리도록 되어 있다. 또 도망가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변호인 이외의 타인도 피의자(피고인)와 접견하고 서류, 기타 물건을 접할 수 있다.(형소 91조, 209조)

② 구속적부심사 청구권

헌법상,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2조 6항). 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에 위반된 경우와, 구속 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피의자(피고인)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피의자(피고인)의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었을 때, 또는 현행범이나 긴급구속시 48시간(혹은 72시간)

경과 이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이에 해당된다. 그동안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은 내란죄, 외환죄, 국가보안법위반죄, 검사인지사건 등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아 왔으나 1987년 0월 0일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항 개정에 의해 전면적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③ 묵비권(진술거부권)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헌법 12조 2항)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형소 제200조) 따라서 피의자는 수사관등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고 싶지 않거나, 혹은 대답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일체 진술을 거부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 경우 수사관이 진술을 강요하거나 더구나 진술강요를 위해 폭행을 행사하는 행위등은 불법으로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④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2조 2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금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헌법 제12조 7항)

⑤ 유리한 자료 제출권등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재판 전이라도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 즉 합의서, 고소취하서, 피해변상 공탁서 및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증거물들을 구속영장 발부 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형소규칙 제96조) 이는 피의자의 변호사, 가족 등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문시에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소 242조)

⑥ 피의자 신문조서 증감 변경 청구권

피의자는 신문을 받으면서 작성된 신문조서 내용을 확인할 권리가 있으며, 확인 결과 조서내용이 자신의 진술내용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해 증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⑦ 구속영장 등본 청구권

피의자(피고인) 및 변호인등은 법원에 구속영장의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장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2) 수사 단계별 유의사항

① 경찰 수사 단계

- * **자술서 작성 요구시** : 경찰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대개의 경우에 신문 조서를 받기 전에 피의자 스스로에게 혐의내용에 대해 '자술서'를 쓰게 한다. 그러나 피의자에게는 법적으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 있는 만큼, 자술서를 쓰고 싶지 않은 경우나, 자술서를 쓰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경찰의 강요에 의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자술서를 쓴 경우에는 법정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자술서 내용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 **조서 작성시** : 법적으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또한 경찰에서 작성한 조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 내용이 진술과 다르다고 그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경찰 조서는 검찰 조서 작성의 토대가 되고, 검찰에서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길잡이가 되며, 구속 영장 발부의 소명자료가 되고, 법원에서 판사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경찰에서 조서를 작성할 때, 사실대로 기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 **신문을 받을 때는** : 첫째, 질문받은 사실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간략히 대답하며, 다른 진술은 덧붙이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는 증거가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부인해야 할 사항은 단호히 부인해야 한다. 셋째, 고문등에 의해 할 수 없이 허위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앞뒤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게 진술한다든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진술등을 남겨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도록 해야 한다. 넷째, 조서 작성이 끝나면, 조서내용에 본인의 진술이 증감 왜곡없이 기재되었는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시에는 그 내용의 증감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검찰 수사 단계

- * **조서 작성시** : 검찰에서 작성되는 조서는 경찰에서 작성되는 조서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즉 검찰 조서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조서와 달리 법정에서 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 임의성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조서 작성시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이 저지르지 아니한 범법사실을 진술해서는 안되며, 특히 경찰 조서에서 진술한 내용이 고문등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이를 반복하여 사실대로 조서가 작성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찰조서 작성시와 마찬가지로 신문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때는 서명날인 하기 전에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

(3) 인권 침해 유형과 대응책

① 편법에 의한 구속기간 연장등

- * **별건 구속** : 별건구속이란 수사기관이 수사하려고 하는 중대한 범죄혐의에 대하여 구속의 요건이 미비한 경우, 별개의 경미한 범죄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한 후 중대한 범죄혐의를 수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살인강도 용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는 구속의 요건이 미비할 경우, 수사과정에서 포착된 절도 혐의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실제로는 살인강도 혐의 부분을 수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방식에 의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에 따라 그 증거능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이중구속** : 이중구속이란 어떤 혐의로 구속된 이후 구속기간의 만기가 되거나 구속 사유가 소멸할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어떤 혐의로 다시 구속하는 것이다. 이는 부당한 구속이며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 * **감정유치의 악용** :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자는 감정유치를 하여 정신이상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불기소처분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시
국관련사건 피의자의 경우, 불기소처분을 하지 않고 감정유치기간
을 계속 갱신하여 피의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삼는 경우가 있다.

② 집견 교통권의 제한

• 변호인의 경우

현행법상 변호인의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이 완전히 보
장되어 있다. 따라서 변호사의 경우 집견교통권이 '법원의 결정'이나
'수사기관의 지시'에 의해 제한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으로 피의자의 소재 파악이 어렵거나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는 경우에
도 법을 무시한 수사 당국의 관행에 의해 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검사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
지' 집견교통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법적인 사례이다.

• 가족등의 경우

현행법상(형소34조)변호인 이외의 경우에도 피의자-피고인이 도망가거
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
에는 집견등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이 조항을
'수사상의 편의'를 위해 터무니 없이 왜곡·남용하여 중요한 시국사건
이나 고문수사의 의문이 있는 사건등의 경우에, 피의자-피고인과 가족
등과의 집견을 제한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해당 경찰서, 구치소 및 담당검사들에게 그 부당
함을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관할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
는 변경을 청구해야 한다.(준 항고)

③ 고문수사

고문은 헌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또한 형법 제125조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
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
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
다. 또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하며, 또 치상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
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에 이르기까지 고문수
사에 대한 보고가 끊이지 않았으며 지금도 완전히 고문수사가 종식되었다
고는 보기 어렵다.

고문은 사건 조작을 위해 허위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정치적인 보복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등이 있다. 고문의
방법으로는 잠 안 채우기, 식사중지, 폭언에 의한 인격적인 무시와 모욕,
협박, 무차별구타, 물고문, 고추가루고문, 통닭구이, 성고문, 전기고문 등
갖가지 악랄한 방법들이 동원된다.

*대응책

• 고문을 견디내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 아무리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라
도 거듭되는 극심한 고문 앞에서는 고립감, 위축감, 무력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확신과, 언젠가는 고문도 끝날 수밖에 없고 결
국은 법정에서 서서 진실을 밝힐 기회가 온다는 확신을 갖고 극단적인 상
황을 이겨낼 수밖에 없다. 고문을 받는 상황에서 인정해야 할 부분과
인정해서는 안될 부분을 분명히 가려서 진술하고 가능한 한 처음에 진
술한 내용을 마지막까지 고수하도록 노력하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앞뒤의 내용이 상호모순되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등을 남겨, 전체 수사 내용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변호사나 가족과의 면담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신이 당한 불법 체포 경위와 고문사실등에 대해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다. 흔히 실제로 고문수사를 당한 후에는 정신적으로
너무나 위축되고 또한 고문 폭로 이후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문상황의 중지를 위해
서도 자신이 당한 고문내용을 폭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고문수사를 당하는 경우에는 고문행위자의 신원과 인상착의등을 상세히 기억해 두고 고문의 증거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검찰에 송치된 후에는 본인이 변호사와 가족등을 통하여 고문행위자들을 고소·고발하도록 한다. 또한 검찰이 고문경관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고문에 의한 피해에 대해 국가나 고문경관을 상대로 국가배상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증거보전 신청을 해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울러 '경위보고서' 등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한다든지, 고문폭로 대회등을 개최하여 여론에 호소하며, NCC 인권위원회와 국제사면위원회 등 국내외 인권단체에 사실을 보고하여 관계당국등에 항의하도록 한다.
- 검찰수사 과정에서는 경찰수사 단계에서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④ 검찰의 기소권 남용

형사소송에 있어 공소를 제기하는 권한은 검사만의 고유한 권한(기소독점주의)이며, 따라서 검사는 준 사법기관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검찰은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아 기소권 행사에 있어, 정치권력의 영향에 크게 좌우되어 왔다. 그 결과, 구속영장청구권의 남용과 마찬가지로 기소권도 자의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즉,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같은 행위가 기소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했던 것이다.

반면에 수사기관원의 고문수사등 정치적 배경이 있는 사람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권력층의 부패를 드러내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유아무야로 끝나고 기소유에 내지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고소·고발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의 결과를 고소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특히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만약 고소인이나 고발

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검사 직상급 검찰청 검사등에게 항고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12조 1항) 또한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재항고(동법 제12조 2항)할 수 있으며 형법 제123조 내지 125조의 죄로 고소·고발한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⑤ 피의사실 공표

근래에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적발했다 하여 공식 발표를 하거나 기사를 흘려 주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형법 126조는 수사기관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더구나 고문수사등에 의해 왜곡 조작된 피의사실을 마치 확정된 사실인 양 공표하여, 해당 피의자는 물론 가족등에게도 결정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고발을 하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명예훼손, 피의사실공표 등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3. 피고인의 인권

(1) 피고인의 지위와 권리

범죄를 범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한다. 피고인 역시 재판에 의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전장에서 설정된 피의자의 권리와 같은 권리들을 가진다. 또한 피고인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단순한 소송의 객체가 아닌 소송 주체로서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소송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보장되며, 법정출석권, 진술권, 진술거부권, 소송진행에 대한 이의신청권, 재판부등에 대한 기피신청권, 증거 및 증인신청권, 상소권 등을 갖는다.

이밖에 보석청구권, 구속취소 청구권, 구속집행정지 청구권을 갖는다.

*구속취소 청구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즉 혐의가 없거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선임권자 등은 구속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구속집행정지청구권: 구속집행정지란 구속의 효력은 그대로 지속되면서 보석금을 내지 않고도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석방될 수 있는 조치이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결정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소 101조) 따라서 구속 중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라든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상의 권리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이러한 권리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러한 권리행사가 방해 받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서는 권리행사 방해에 대하여 고소와 고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2) 재판 진행 단계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인-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분이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은 후에는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또한 법전을 차입하여 참고를 하며,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인과의 점검을 통해서 재판의 세세한 부분까지 조언을 받고 정리하면서 공판에 임할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지정된 공판기일까지 피고인이 공판에 임할 준비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서면으로 공판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 지정된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나가서 공판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공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 ① 인정신문
- ② 검사의 기소요지진술
- ③ 피고인의 모두진술

④ 피고인 신문(검사직접신문, 변호인반대신문, 법원보충신문)

⑤ 증거조사

⑥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또는 논고)

⑦ 변호인의 변론

⑧ 피고인의 최후진술

⑨ 판결

이러한 과정은,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2회 정도의 공판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재판의 경우에는 10여 차례의 공판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다.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법정대리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등은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다. 항소 제기 기간은 7일이며,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항소인은 항소법원이 소송기록등을 접수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를 하게 되면 여전히 미결수의 신분을 갖게 된다. 그러나 항소를 포기하면 형이 확정되어 기결수가 된다.

(3) 피고인에 대한 권리 침해의 유형

① 방청권 제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공개재판이 보장되어 있으나, 시국 사건의 경우 흔히 방청석을 교도관, 전경 등이 미리 차지해 버리고 방청권을 피고인의 가족 등 극소수에게만 배부하여 사실상의 비공개재판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 피고인 본인과 변호사등은 재판부에 항의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재판을 거부하고 가족, 친지 들은 적절한 방법으로 항의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불공평한 공판진행

피고인은 소송의 주체로서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모든 진술을 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입증할 증인 및 증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하며,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의 폭행이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수자를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재판부나 검사가 종종 피고인에 대하여 반말을 쓰는 등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제한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하는 증거나 증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불공평한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

③ 피고인의 출석권과 재판거부등

형사소송법상(제276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정에 일단 출석하였다가 재판을 거부하고 임의로 퇴장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장한 경우에 해당되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며, 양형 등에 있어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④ 공판조서 열람권

피고인은 해당 공판기일의 심리에 관한 주요사실의 요지를 기록한 공판조서의 열람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또 공판정에서 전회의 공판조서의 낭독을 요구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4) 공판진행 중의 가족들의 대책활동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들은 우선 열심히 공판에 참석하여 방청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판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족들 상호간에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방청 제한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판부가 불공평한 공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농성등으로 항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경우에 따라서 법정모욕죄(형법 138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만오천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가족들은 공판방청을 하면서 공

판내용, 특히 피고인의 진술 중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4. 재소자의 인권

(1) 재소자 인권의 기본 성격

지난 수년간 전국 각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재소자의 처우 문제와 관련하여 수많은 인권문제가 발생하였다. 재소자 인권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두 가지이다. 첫째, 양심수 혹은 정치범들(미결·기결 포함)은 스스로를 양심의 명령에 따라 정당한 대의를 추구하다, 불의한 권력에 의해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상응한 형사정책적 배려를 요구함에 대하여 행형당국은 일제시대이래의 전근대적, 인권침해적인 구태의연한 행형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 과정에서 많은 재소자들이 고문이나 다름없는 가혹한 탄압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였으며, 반면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이룩해낸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현재의 행형제도 하에서의 재소자 인권개선은 상당 부분 재소자들의 소내 투쟁 역량에 좌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행 행정법에 의한 행형제도가 기본적으로 재소자의 권리보호보다는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 있는 반면, 양심수(정치범)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재소자들과 교정당국과의 충돌이 끊임없이 야기되어 왔다. 그러나 재소자 인권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행형제도에 대한 근본 철학의 변화와 그에 따른 행형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만 하겠다.

(2) 현행 행형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응책

① 재소자들이 주장해야 할 인권

현행 행형제도는 앞서 지적인 대로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 있어 재소자

의 권리는 대부분 소장의 허가 사항등으로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재소자들이 그 처우를 행형당국에만 맡겨 두는 한 소내의 일상생활 속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처우를 받는 것도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소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자신들의 최소한의 권리로 스스로 주장해야만 할 것이다.

- 미결수는 기결수와 분리하여 수용되어야 한다.
- 여자는 남자와 분리하여 수용되어야 한다.
- 질병자, 정신이상자, 사형수 등과는 분리하여 수용되어야 한다.
- 좁은 방에 과도하게 밀집 수용하여서는 안된다. (구치소나 교도소에서는 '칼잠'을 자야 하는 정도로 밀집 수용하는 사례가 많다.)
- 교도관은 재소자들에게 반말을 포함하여 폭언을 하여서는 안된다.
- 채광 및 조명과 통풍 화장실 시설 및 동절기 난방등은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할 정도이어야 한다.
- 교도관은 재소자들에게 구타등 폭행을 하여서는 안된다.
- 미결수의 두발은 단삭하지 아니한다. 기결수의 경우에는 단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필요이상으로 짧게 깎아 인격적인 모욕감을 갖도록 해서 는 안된다.
- 식사와 기타 관급품은 규정에 의한 정량이 지급되어야 한다.
- 접견은 본인이 거절하지 않는 한 모두 허용되어야 하며, 면회시간은 필요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접견 대상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은 없어야 한다. (이를테면 이른바 시국사범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범과는 달리 직계가족에게만 접견이 허용되어 왔는데, 이런 차별은 철폐되어야 한다.)
- 서신 수발은 그 회수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되며, 그 검열은 해당사건의 증거인멸등의 우려와 무관한 자의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 도서 열독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제한을 두어서는 안되며, 특히 사회과학 서적등에 있어 시중판매 서적을 차입금지시켜서는 안된다.
- 재소자에게는 소송에 관계된 각종 서류의 전달을 포함하여, 집필이 허용되어야 한다.

- 운동은 최소한 하루에 1회 이상 1시간 정도의 육외 운동이 허용되어야 한다.
 - 목욕은 최소한 주 1회 이상 30분 정도의 시간이 허용되어야 한다.
 - 질병이 있는 사람은 진료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 행형당국에 의한 징벌은 정해진 정당한 절차에 의해 취해져야 하며, 징벌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본인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주어 져야 한다.
- 이 밖에도 재소자들은 현재의 처우 중에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그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② 권리 주장 방법

행형법상 재소자에게 보장된 권리로서 청원의 방법이 있다. 즉 재소자는 처우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할 수 있으며, 교도관은 지체없이 이를 보호하고 청원서면을 관계 소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권리가 묵살되기 일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권리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인 만큼, 계속 주장하여야 하며, 시행이 안될 때는 가족등 외부와 연락하여 교도소장등을 상대로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한다. 또한 재소자에 대한 부당한 폭행이 행해질 때에는 형법 125조 위반(폭행, 가혹행위)등으로 관계교도관과 책임자를 고소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 실제로는 고소장 작성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며 따라서 단식투쟁을 비롯하여 소리치기(샤우팅)등 다양한 소내투쟁 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그러나 소내투쟁이 소내투쟁으로만 그쳐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며, 소내투쟁 상황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가족 등 외부와 연락하여 가족들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또한 소내투쟁을 필요 이상으로 무리하게 자주 제기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전국의 여러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연이어 소내투쟁이 일어나는 경우 이를 외부에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효과적인 외부지원이 없이는 흔히 재소자들의 일방적인 패배로 소내투쟁이 귀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 소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최초로 입수하면, 이를 같은 소내의 다른 구속자 가족들에게도 알려, 일제히 접견을 시도하고 또한 변호사 접견을 의뢰하여 소내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 소내 상황이 확인되면 가족들이 해당 교도소(구치소)로 물러가 교도소장 등 당국자와의 면담을 요구, 시정을 촉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농성 등의 방법을 쓸 수도 있다. 또한 폭행, 가혹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고, 언론등을 통한 여론 작업과 인권위원회등 인권단체를 통한 압력 작업을 해야 한다.
- 또한 재소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225호)은 다음과 같다.

위반사항	징 벌
교도관에 대한 폭행 협박	7일 감식 또는 2월 금지
정당한 이유 없는 단식	2월 금지
작업-교육훈련 거부, 태만 음주-흡연, 주류 또는 담배의 소지-은닉 무허가 물품제작-소지-은닉 교도관보조자 또는 재소자에 대한 금품요구, 가혹행위	7일 이내 감식 또는 1월 이상 2월 이내 금지
재소자 상호간의 싸움-난동 신입자에 대한 희롱-난동	7일 이내 감식 또는 1월 이상 2월 이내 금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를 가한 경우 7일 감식 또는 2월 금지)

장소 이탈	7일 이내 감식이나 2월 이내 금지 혹은 작업정지
도박행위, 인화물질소지 은닉 금품질취-강취·편취·사취 재소자간 무허가 물품교환-수수	4일 이내 감식 또는 1월 이내 금지 또는 1월 이내 작업정지
시설 또는 물품파괴-훼손 밀담-밀회, 자살기도-자해행위	1월 이내 금지 또는 5일 이내 운동 금지
무허가 서신연락	1월 이내 금지 또는 2월 이내 접견-서신금지
계구손괴, 고성방가, 작업기재 손괴-재료낭비 허위사실 신고	1월 이내 금지 또는 1월 이내 작업정지
무단수면, 청소불량-낙서 번호표 등 훼손-미부착 외래인에 대한 모욕 의류등 변형-손괴	20일 이내 금지 또는 5일 이내 운동정지
무허가 도서열독 수면방해	3일 이내 도서열독 금지 또는 경고
기타 내부질서 위반	15일 이내의 금지 또는 5일 이내 운동정지

5. 보안처분과 인권

현행 헌법 제12조 1항에는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문을 근거로 제정된 것이 사회안전법이다. 이 법에 의하면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결 여부에 관계 없이 특정범죄(내란, 외환, 국가보안법 관련죄 등)로 복역한 경력이 있는 정치범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라는 명목으로 보호관찰 처분(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 주거제한 처분(거주, 이전, 주거의 자유를 제한), 보안감호처분(신체의 자유를 제한)등의 보안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1) 보안처분의 종류

① 보호관찰 처분

보호관찰 처분은 헌법상의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행복추구권(제9조)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행정부의 처분을 말한다. 이 처분을 받은 자는 소정의 사항을 거주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즉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는 일정사항의 신고의무와 관할경찰서장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두 가지의 불이익을 받는다. 신고의무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해야 할 사항과 매 3개월마다 1회씩 신고해야 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시행령 제3조), 경찰서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복종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3조)

- 주거지에 일상적으로 거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 죄를 범할 기회 또는 충동을 줄 수 있는 일정한 물건을 소유·보관·소지하지 말 것.
-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일정한 행동을 하지 말 것.
- 죄를 다시 범할 기회 또는 충동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 또는 일정한 집단의 성원과 통신·화합하거나 이러한 자를 고용 또는 숙박시키지 말

것.

그런데 위의 복종의무사항은 어디까지나 시행령상의 규정이다. 헌법상으로도 명시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시하고·선량한 시민의 자유를 무참히 유린할 수 있는 사항이 행정부의 위임명령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법률적으로 위헌일 뿐만 아니라 현 정권의 독재적 통치성격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은 아래의 두 가지 보안처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이다.

② 주거제한 처분

이 처분을 받은 자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가 받는 온갖 제약을 포함하여 그 위에 주거지역 내에서만 거주생활하고 생활지역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는 일종의 연금 상태를 당하게 된다.(시행령 제 6, 7, 8조)

③ 보안감호 처분

이 처분을 받은 자는 일정한 장소(대개의 경우는 형무소에 그대로 억류된다)에 수용되어 교화·감화를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 9, 10조) 이것은 실제로 신체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자유형의 효과를 가지지만 자유형이 법원의 판결로서 죄를 범한 자에게 내려지는 반면 보안감호 처분은 행정부의 결정으로서 죄도 없는 자에게 내려진다는 점에서 명백히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2) 보안처분 대상자와 문제점

보안처분의 대상자는 보안처분대상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해당된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특별사면의 조치를 내린 경우라 하더라도 석방됨과 동시에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만기출소의 경우라 하더라도(말하자면 죄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역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보안처분 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형법 중의 보안처분 해당범죄(내란의 죄, 외환의 죄)
- 제87조(내란의 죄), 제88조(내란목적 살인), 제89조(미수범), 제90조(예

비, 음모, 선동, 선전), 제92조(외환유치), 제93조(여적), 제94조(모병이적), 제95조(시설물 제공이적), 제96조(시설물 파괴이적), 제97조(물건제공이적), 제98조(간첩), 제99조(일반이적), 제100조(미수범),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 군 형법 중의 보안처분 해당죄(반란의 죄, 이적의 죄)

제5조(반란), 제6조(반란목적의 군용물 탈취), 제7조(미범), 제8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9조 2항(이적목적반란 불보고), 제11조(군대 및 시설물 제공), 제12조(군용시설등 파괴), 제13조(간첩), 제14조(일반이적), 제15조(미수범), 제16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 국가보안법 중의 보안처분 해당죄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제4조(목적수행),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제6조(잠입·탈출), 제7조(찬양, 고무 등), 제8조(회합, 통신), 제9조(편의제공)

(3) 보안처분의 결정

보안처분은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법무부장관이 이를 심사하고 법무부 산하의 보안처분심의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의 의견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같은 보안처분의 결정과정은 앞서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부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보안처분은 형벌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볼 때 행정부의 단독적인 처리과정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3권 분립의 원칙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이다. 더우기 일단 내려진 보안처분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 결정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즉,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 하더라도 헌법이 아닌 법령에만 위반하지 않는다면 반대소송조차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여(법 제20조) 법적구제의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보안처분의 기한은 한 번에 2년씩이지만 검사의 청구만 있으면 회수에 제한없이 무제한 갱신할 수 있으므로 일생동안 보안처분 대상으로 지낼 수도 있다. 형법상에 있어서조차 일정한 형량을 정하여 판결해

야 하는 원칙, 즉 부정기형금지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는 판에 형법보다 간단한 절차로서 취해지는 보안처분이 기한조차 무제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정권의 자의에 의한 기본권의 명확한 침해로 해석되어야 하며 명확히 위헌적인 조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보안처분의 면제 결정

법무부장관은 보안처분대상자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보안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보안처분의 면제라고 일컫는다. 여기에서 요구되는 일정한 요건이란 첫째, 반공정신의 확립 둘째, 주거와 생업이 확실할 것 셋째, 신원보증에 있을 것 등이다.

이중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반공정신을 확립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요건이다. 이 규정이 모호하고 막연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행정부가 보안처분의 권한을 장악하고 있는 마당에서 현실적으로 반공이란 현 정권에 대한 인정이란 개념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독재정권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무기로 반공이테올로기를 어떻게 악용해 왔는가를 보더라도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게다가 헌법 18조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는 국가권력이나 타인이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이다. 일단 응분의 댓가를 받은 범죄에 대해서 단지 그 사람이 반정부적 생각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사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보안처분에 의한 인권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과 사회안전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부 록

1. 국제인권규약/43

- (1)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

2. 주요 서식례/79

3. 인권관계단체·교도소·인권변호사 주소록/105

국제인권규약

I.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채택 1966년 12월 16일 (국제연합 제21회 총회)

● 전문 ●

본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서 선언된 원칙에 따라서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라는 것을 고려하여,
이러한 권리가 인간고유의 존엄에서 유래하는 것을 인식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서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인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함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상태가 창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국제연합헌장이 각국에 과하고 있는 인간의 권리 및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촉진하는 의무를 고려하며, 개인은 타인과 그가 속한 사회에 대하여 의무를 지며, 본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촉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할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다음의 제규정을 협정한다.

제 1 부

제1조 ① 모든 사람은 자결권을 갖는다. 모든 사람은 이 권리에 의하여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며 그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② 모든 사람은 호혜의 원칙과 국제법에 기하여 국제적인 경제협력에서 발생한 의무를 해치지 않는 한,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유로이 처분할 수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인민은 자기들의 생존의 수단을 박탈당하지는 않는다.

③ 비자치지역과 신탁통치지역의 시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를 포함하여 본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서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는 한편 본권리를 존중하여야만 한다.

제 2 부

제2조 ① 본규약의 각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치의 채용을 포함하여 모든 적당한 방법에 의해서 본규약에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그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개별적으로 또는 특히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국제적 원조와 협력을 통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② 본규약의 당사국은 본규약에 기재된 권리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기타의 의견, 국민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지위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행사되리라는 것을 보장함을 약속한다.

③ 발전도상국은 인권과 국가경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본규약에 인정된 경제적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닌 자에게 보장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조 본규약의 당사국은 본규약에 제기된 모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향수에 있어서 남녀평등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본규약의 당사국은, 국가가 본규약에 따라서 부여한 이러한 권리의 향수에 대해서는 이러한 권리의 성질과 양립하고, 또 오직 민주사회에서의 공공의 복지를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제한에 한하여 이러한 권리에 과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제5조 ① 본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본규약에서 인정된 권리 혹은 자유를 파괴할 것을 또는 본규약에서 정한 한도 이상으로 그것을 제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권리 또는 그러한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② 법률, 조약,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해서 각국내에 인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는 어떠한 기본적 인권에 대해서, 본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그러한 권리를 인정할 정도가 낮다는 것을 구실로 하여, 그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 3 부

제6조 ① 본규약의 당사국은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본권리는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승락하는 노동에 의해서 생활비를 얻을 기회를 갖는 권리를 포함한다.

② 본규약의 당사국이 이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자유를 보장할 조건 하에 착실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과 생산적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 및 직업의 지도와

훈련계획, 그러한 정책과 같이 기술적 방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본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자가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향수할 권리를 갖는 것을 인정한다. 이 노동조건은 특히 다음 사항을 확보한다.

- ㉔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주는 보수.
 - ㉑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보수, 특히 여자는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보수와 함께 남자가 향수하는 노동조건에 열등하지 않은 노동조건을 보장한다.
 - ㉒ 노동자 자신과 그의 가족에 대한 상당한 생활에서 본규약의 규정에 합치하는 것.
 - ㉓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 ㉔ 모든 자가 그의 고용관계에 있어서 선임순과 능력의 고려 이외의 어떠한 고려도 가함이 없이 적당하게 높은 지위에 승진될 수 있는 평등한 기회.
 - ㉕ 휴식, 여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 정기적인 유급휴일 및 공휴일에 대한 보수.

제8조 ① 본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 ㉔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관계단체의 규약에 따른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자기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제한에서 국가의 안전 혹은 공공의 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해서는 안된다.
- ㉕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할 권리 및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이 국제적인 노동조직을 결성하거나 혹은 가입할 권리.
- ㉖ 노동조합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제한 안에서 국가의 안전

혹은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에도 따르지 않고서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

- ㉑ 동맹파업을 할 권리. 다만 본권리는 각국의 법률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다.
- ㉒ 본조는 군대나 경찰의 구성원 또는 국가의 행정직원에 의한 전기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제한을 과하는 것은 무방하다.
- ㉓ 본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조약의 당사국이 동조약에 규정한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제9조 본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인정한다.

제10조 본규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 ①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집단단위인 가정에 대해서는, 특히 가정의 창설을 위하여 가정이 부양아동의 양육과 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은 가능한 한 광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한다. 혼인은 혼인의 의사를 가진 양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하여 성립되어야만 한다.
- ② 출산전후의 합리적인 기간 중에는 특별한 보호를 임신부에게 부여하여야만 한다. 이 기간 중 노동에 종사하는 임신부에게는 유급휴가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급부를 수반한 휴가가 부여되어야만 한다.
- ③ 출생 기타 사정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아동과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해져야만 한다. 아동과 연소자는 경제적·사회적인 착취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를 도덕 혹은 건강에 유해하거나, 생명에 위협하거나 또는 정상적 발전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에 종사케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 국가

는 또 연령의 제한을 정하여 아직 그 연령에 달하지 않은 아동을 임금을 지급하여 사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고 처벌되어야 한다.

제11조 ① 본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료, 의복과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와 자기가족을 위하여 적당한 생활수준을 향수하고, 또 생활조건의 부단한 개선을 구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동의에 기한 국제적 협력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② 본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기아에서의 자유를 향수할 기본적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며, 개별적으로 또는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기술적·과학적 지식을 충분히 이용함으로써 영양에 관한 재원적에 대한 지식을 보급함으로써 천연자원의 가장 효과적인 개발과 이용을 달성함과 같은 방법으로 농지개혁을 발전시키거나 또는 개혁함으로써, 식료의 생산·보존과 분배의 방법을 개선할 것.

㉡ 식료의 수입국과 수출국 쌍방의 문제를 고려하여 수요와의 관계에서 세계의 식량공급의 공평한 분배를 확보할 것.

제12조 ① 본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그가 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수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

② 본규약의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 필요로 하는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 사산률과 유아의 사망의 감소, 아동의 건강한 발육.

㉡ 환경위생과 산업위생의 모든 분야의 개선.

㉢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와 박멸.

㉣ 병환의 경우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의료와 간호를 확보함과 같은 조건의 창조.

제13조 ① 본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란 인격과 그 존엄의 의식이 충분히 발전하도록 지향되어야 하며,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에 합의한다. 당사국은 또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효과적으로 자유로운 사회에 참가하고, 각 국민과 모든 인종적·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의 이해, 관용과 우호를 촉진하고 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의 활동을 조장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에 합의한다.

② 본규약의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적이고 무상으로 하여야만 한다는 것.

㉡ 기술적·직업적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제종형태의 중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따라,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인 채용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만 한다는 것.

㉢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인 채용에 의하여 재능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되어야만 한다는 것.

㉣ 기초교육은 초등교육의 전과정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그것을 종료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가능한 한 장려하거나 강화되어야만 한다는 것.

㉤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충분한 장학금제도를 설치하고, 교육직원의 물질적 조건을 계속하여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③ 본규약의 당사국은 부모와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보호자가 아동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 이외의 학교에서 국가가 설정하거나 또는 승인한 최저한의 교육기준에

합치하는 것을 선택하고 또 자기의 신념에 따라 아동의 종교적·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④ 본래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 또는 단체가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자유에 간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본조의 제 ①항에 규정한 원칙이 준수되고 이와 같은 시설에서 부여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저한의 기준에 합치하는 것만은 항상 필요로 한다.

제 14 조 본규약의 당사국으로 된 때에 그 본토지역 또는 그 관할 하에 있는 기타 지역에 있어서 무상의 의무적 초등교육을 확보할 수가 없었던 각 당사국은 모든 사람에 대한 무상의 의무교육의 원칙을 그 계획 중에 정한 합리적인 연한내에 점진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상세한 행동계획을 2년 이내에 작성하고, 채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 15 조 ① 본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다음의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

㉔ 문화생활에 참가할 권리.

㉕ 과학의 진보와 그 응용의 이익을 향수할 권리.

㉖ 작자인 사람은 자기의 과학적·문학적 또는 예술적 작품에서 생긴 정신적·물질적 이익의 보호에 의하여 이익을 향수할 권리.

② 본규약의 당사국이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는 과학과 문화의 보존발전과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야만 한다.

③ 본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④ 본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문화적 분야에 있어서 국제적인 접촉과 협력의 장려와 발전에 의하여 이익이 도출되는 것을 인정한다.

제 4 부

제 16 조 ① 본규약의 당사국은 본규약에선 인정된 권리의 준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채용한 조치 및 실현된 진보에 관한 보고를 이 부분의 규정에 따라서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② ㉔ 모든 보고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사무총장은 본규약의 규정에 따라서 행해짐 심의를 위해서 경제사회이사회에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또 본규약의 당사국이면서 전문기관의 가맹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출된 보고 또는 그 관계부분의 사본은 그러한 것이 전기 전문기관의 현장에 따라서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계가 있는 한, 전기 전문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17 조 ① 본규약의 당사국은 경제사회이사회가 당사국과 관계있는 전문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본규약의 효력발생 후 1년 이내에 설정할 계획에 따라서 그 보고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에서는 본규약에 기한 의무의 이행의 정도에 영향있는 요소와 장애를 지적할 수가 있다.

③ 관계있는 정보가 본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국제연합 또는 어떠한 전문기관에 이미 송부되어 버린 경우에는 그 정보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고 송부된 정보에 정확하게 언급하는 것으로서 족하다.

제 18 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분야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상의 그 임무에 따라서, 전문기관이 그 활동범위에 속하는 본규약의 제규정의 준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현한 진보에 대하여 동이사회에 보고할 것에 관하여 이러한 전문기관과 협정할 수가 있다. 이러한 보고에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권한있는 기관이 행한 그러한 제규정의 실시와 관한

결정과 권고의 상세한 것을 포함할 수가 있다.

제19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제16조와 제17조에 따라서 당사국에서 제출된 인권에 관한 보고와 제18조에 따라서 전문기관에서 제출된 인권에 관한 보고를 연구와 일반적 권고를 위하여 또는 정보를 위하여 적당한 것으로서 인권위원회에 송부할 수가 있다.

제20조 본규약의 당사국과 관계있는 전문기관은 제19조에 의한 일반적 권고에 관한 의견 또는 인권위원회의 보고 혹은 그 중에서 언급되고 있는 문서에서 위의 일반적 권고에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의견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가 있다.

제21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일반적 성질의 권고를 포함한 보고와 본규약에 인정된 권리의 일반적 준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와 실현된 진보에 관하여 본규약의 당사국과 전문기관에서 받은 정보의 개요를 수시로 총회에 제출할 수가 있다.

제22조 경제사회이사회는 본규약의 제4부에서 규정한 보고에서 생긴 문제로서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 그들의 보조기관과 기술원조의 제공에 관계있는 전문기관이 각개의 권한의 범위내에서 본규약의 효과적인 점진적 실시에 공헌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국제조치의 권고의 여하를 결정함에 도움이 되는 것에 관하여 전기의 기관의 주의를 환기할 수가 있다.

제23조 본규약의 당사국은 본규약에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적 조치에 조약의 체결, 권고의 채택, 기술원조의 공여와 관계정부와 협력하여 조직된 협의 및 연구를 위한 지역적 회합과 기술적 회합의 개최가 포함되는 것에 합의한다.

제24조 본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본규약 중에 취급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제기관과 전문기관의 각개의 책임을

정한 국제연합헌장과 전문기관의 헌장의 규정을 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제25조 본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사람이 그 천연의 부와 자원을 충분히 자유롭게 향수하고 이용할 고유의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제 5 부

제26조 ① 본규약은 국제연합의 가맹국, 어떤 전문기관의 가맹국,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당사국 및 국제연합총회에서 본규약의 당사국으로 되려는 초청을 받은 기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② 본규약은 비준을 필요로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③ 본규약은 본조의 제①항에 제기된 모든 나라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되어야 한다.

④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행하여진다.

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본규약에 서명하거나 또는 본규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① 본규약은 35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의 3개월 후에 효력이 생긴다.

②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에 본규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본규약에 가입한 각국에 대해서는 본규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의 3개월 후에 효력이 생긴다.

제28조 본규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도 없이 연방국가의